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10
----------	-------

발의연월일 : 2026. 3. 4.

발 의 자 : 진성준 · 박용갑 · 김한규
김남근 · 김현정 · 박홍배
김태년 · 허영 · 윤건영
임오경 · 김윤 · 이학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중 시외버스운송사업자인 직행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와 일반형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자마다 운행하는 시·도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조합 설립을 위한 인가권자인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시·도지사”를 “제1항 본문 또는 단서에 따른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시·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시·도지사가”를 “인가권자는”으로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4조제2항 중 “시·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

제57조 중 “시·도지사”를 “인가권자”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 ----- ----- ----- ----- ----- ----- . 다만, 2개 이상의 시·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등 관할 시·도지사가 명확하지 않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해당 운송사업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u>시·도지사</u> 에게	④ ----- ----- ----- ----- ----- ----- ----- 제1항 본문 또는 단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⑦ · ⑧ (생략)

제54조(정관) ① (생략)

②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시·도지사는 조합이 제55조 각 호의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조합에 명할 수 있다.

1. ~ 3. (생략)

서에 따른 인가권자(이하 “인가권자”라 한다)-----

-----.

⑤ 인가권자-----

-----.

⑥ 인가권자는-----

-----.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54조(정관) ① (현행과 같음)

② -----
인가권자-----

-----.

제56조(정관변경 등의 명령) 인가권자-----

-----.

1. ~ 3. (현행과 같음)

제57조(감독) 조합의 사업은 <u>시·</u> <u>도지사</u> 가 감독한다.	제57조(감독) ----- <u>인가</u> <u>권자</u> -----.
--	--